

의안번호 제98호

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논산시장		
제출연월일	2021. 7. 23.		

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⁹⁸호

제출연월일: 2021. 7. 23. 제 출 자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시 민간위탁 조례의 중복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O 민간위탁 추진 사무의 중복 및 불필요한 규정인 "별표(민간위탁사무)" 삭제 (안 제4조제4항 및 별표 삭제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타사항

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2) 성별영향평가 :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절차 종료

3) 규제심사: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

4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1. 06. 28. ~ 07. 18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5) 비용추계서 : 붙임과 같음

6) 충청남도소관실과 : 충청남도 자치행정과(☎ 041-635-3600)

□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4항 및 별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	성 명			
입	자 >	이 행 정 3	과 장	김	민	%
안	인	사 팀	장	야	미	ঠ
자	담	당	자	국 (74	광 6-52	<u>ই</u> 33)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	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민간위	<u><삭 제></u>
탁 할 수 있는 사무는 별표와	
<u>같다.</u>	

※ 별표(민간위탁사무) 삭제

붙임

비용추계서

-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- ㅇ 해당 없음
- 2. 비용추계결과
 - 가. 추계의 전제
 - ㅇ해당 없음
 - 나. 추계결과
 - ㅇ해당 없음
- 3. 작성자

자치행정과장 김 민 영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 (발췌)

□「지방자치법」제22조 및 제104조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-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 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